

[별표 3의2] (제5조제1항제3호 관련)

소프트웨어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 구 분 | 심사분야 | 심 사 항 목 | 배 점 한 도 | |
|------------------|----------------------|--|----------------|----------------|
| | | | 추정가격 5억원이상 | 추정가격 5억원미만 |
| I. 해당 용역 수행능력 | 1.이행실적 |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 20 | - |
| | 2.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10 | 20 |
| | 3.기술능력 | 기술인력 보유 상황 | 10 | 10 |
| | 4.신인도 | | +4.25~ -5.0 | +4.25~ -5.0 |
| | 계 | | 40 | 30 |
| II.입찰가격 | | ※ 입찰가격 계산식 참조 | 60 | 70 |
| 합 계 | | | 100 | 100 |
| III. 결격사유 |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파산·해산·부정당 업자 제재·영업정지·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 -20 | -20 |

①입찰가격 계산식

$$\bigcirc \text{평점(점)} = \text{배점한도} - 4 \times \left| \left(\frac{91}{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right| \times 100$$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4%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4%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2.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기술능력 평가는 3. 기술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2.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 심사항목 | | 평가등급 | 평 점 | | 비 고 |
|---|---------|--|---------------------------|----------------|-----|
| | | | 추정가격 5억원 이상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
|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 이행실적 비율 [용역금액 또는 용역대상물 취득가액 기준] | 가. 동등용역 |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 20 18 16 14 0 | - | |
| | 나. 유사용역 |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 6 4 2 1 0 | - | |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3. 기술능력 평가기준

(단위 : 점)

| 심사항목 | 평가등급 | | 평 점 |
|--|---------------|-------|-----|
| | 자격증 | 보유인원 | |
| <기술인력 보유상황>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 분야(시행규칙[별표2] 중직무분야 중 전자, 정보기술, 방송·무선, 통신에 한함)의 자격증 소지자 보유상황 | A. 기술사 또는 기능장 | 2인 이상 | 10 |
| | | 1인 | 8 |
| | B. 기사 또는 산업기사 | 3인 이상 | 10 |
| | | 2인 | 8 |
| | | 1인 | 4 |
| | C. 기능사 | 3인 이상 | 6 |
| | | 2인 | 4 |
| | | 1인 | 2 |
| D. 미보유 | | 0 | |

※[주] 해당 자격증 소지자(대표자 포함)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기술·기능자격 관련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평가한다. 평가등급의 A, B, C등급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2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경우에는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